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8일, 박찬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국회법」 제58조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제1차 전체회의(2026.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찬대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조선·무역 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됨. 또한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만도시인 인천과 부산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해사법원의 설치 여부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해사사건 분쟁해결 소요비용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 해사법원 예상 사건 수의 적정성, 해사전담재판부 확대 설치 등과 비교한 효용성, 사건관계인들의 사법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